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914

발의연월일: 2021. 6. 21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강득구 · 오영환

임종성ㆍ이용빈ㆍ문진석

김수흥 · 강병원 · 정일영

이수진(비) · 양정숙 · 김병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,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.

특히,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 요가 있음.

이에 한자어 표현인 "속행"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"계속 진행"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3조의2제1항 중 "속행"을 각각 "계속 진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의2(시정조치명령의 집행	제53조의2(시정조치명령의 집행
정지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	정지)
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	
령을 받은 자가 제53조(異議申	
請)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	
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	
절차의 <u>속행</u> 으로 인하여 발생	<u>계속 진행</u>
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	
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	
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	
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	
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	
<u>속행</u> 에 대한 정지(이하 "執行	계속 진행
停止"라 한다)를 결정할 수 있	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